

【총평 : 이경】

더운 여름, 치진 체력으로 시험을 치른 수험생분들 고생하셨습니다.

2018년 국가직 7급 행정학 시험은 다소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14번 비용편익분석, 16번 지방채, 18번 정부간 관계, 19번 민원 행정, 20번 재정건전화가 다소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들이 섞여있고 기본적인 내용은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안정적으로 고득점 하여왔던 학생들의 경우에도 완전한 고득점을 자신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부분별 문항분포>

구분	총론	정책	인사	조직	재무	지방자치
문항 수	2	5	3	3	2	5

이제, 이번 시험은 우리의 손을 떠났습니다.

출제주제들은 다시 공부하고 10월에 있을 지방직 7급 시험을 차분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파이팅!

- 이 경 드림 -

1. 행태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 ②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지 않는다.
- ④ 사회현상을 관찰 가능한 객관적 대상으로 보며,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고 인식론적 근거로서 논리실증주의를 신봉한다.

【총론-1】 행태적 접근방법(행태주의)

- ③ [X] 행태적 접근방법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가치판단을 배제한다. 즉, 겉으로 보여지는 행정인의 행태(behavior)에 초점을 맞추며, 조직 내 개인 간 행태를 경험적 조사방법으로 분석한다. 이는 사소한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시키고 급박한 사회문제는 소홀히 다루게 되는 한계이기도 하다.

▶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지 않는다 → 구분한다.

행태적 접근 : 새행정학 2.0(이중수 외, 대영문화사) 73-74P

행태적 접근방법은 행정인의 행태(behavior)에 초점을 맞춘다. 행태론자는 제도나 법률이 행정에서 중요하지만 그것이 행정의 실체는 아니라고 한다. 행정학의 관심사는 제도 속에 있는 행정인의 행위나 활동이어야 한다고 본다. 행태론은 관리기술이 아닌 조직 내 개인 간 행태를 경험적 조사방법으로 분석한다. 분석의 초점은 행정인의 사회화·심리적 동기에 대한 연구로 확대됐다. 행태적 접근방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현상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사회현상을 관찰 가능한 객관적 대상으로 보며,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고 인식론적 근거로서 논리실증주의를 신봉한다.④

둘째, 행태주의는 명백한 자극과 반응으로 볼 수 있는 행위 또는 행동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심리학적 행동주의와는 달리 특정 질문에 따른 반응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는 태도, 의견, 개성 등도 행태에 포함시키고 있다.

셋째,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②고 보며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명백히 구분하고 가치중립성을 지킨다.

넷째,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객관적인 측정방법을 사용하며 자료를 계량기법으로 분석한다.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①.

비판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태주의는 인간의 외면적인 행태를 관찰하고 설명하지만 그 행태 이면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의 세계만을 다루어 경험적 보수주의에 빠지기 쉽다. 둘째, 본질이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연구방법보다 중요하며, 사회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도구적인 연구 방법보다 중시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과학에서 가치와 사실을 분리시키고 가치판단을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행태주의의 연구들은 사소한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시키고 급박한 사회문제는 소홀히 다루게 된다.

2. 신엘리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무의사결정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② 모스카(Mosca)나 미헬스(Michels)등에 의해 대표되는 고전적 엘리트이론과 달리 밀즈(Mills)의 지위접근법이나 헌터(Hunter)의 명성적 접근방법을 도입하였다.
- ③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력은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가운데 하나의 측면만을 고려하는 다원주의를 비판하였다.
- ④ 엘리트는 정책문제의 정의와 의제설정과정에서 은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증적 분석방법론의 활용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정책-1】 신엘리트이론

- ② [X] 밀즈(Mills)와 헌터(Hunter)는 1950년대 엘리트론자이다. 밀즈는 미국 전국 차원에서 군산복합체의 엘리트 연구를(1956), 헌터는 애틀랜트 시의 명성엘리트 40여명을 연구하였다(1963). 신엘리트이론은 밀즈와 헌터 이후의 엘리트론 연구이다.

신엘리트이론 : 무의사결정론(Non decision Making) : 정책학 원론(정정길 외, 대영출판사, 233-234P)

1950년대 미국사회를 대상으로 논의된 미국의 엘리트론은 이후 후술하게 될 Dahl 등의 다원주의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다원론은 또다시 무의사결정론인 신엘리트론에 의해 비판을 받는다. Bachrach(바흐라흐)와 Baratz(바라츠)는 행태주의자인 Dahl의 실증적 접근방법이 단순한 명성에 의하여 엘리트의 권력행사를 파악하려고 한 Hunter의 방법보다는 우수하지만 엘리트에 의한 권력행사의 다른 하나의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력은 두 가지 얼굴(two faces of power)이 있는데, 다원론자는 이 가운데 하나의 측면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③.

권력의 밝은 측면을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결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반면 어두운 측면은 정책결정 이전에 정책문제와 의제설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Dahl은 전자의 얼굴을 실증방법론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후자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것을 무의사결정이라고 부르는 데, 정책문제의 채택과정에서 엘리트가 권력을 비밀리에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신엘리트론'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①.

Bachrach와 Baratz에 따르면, 엘리트는 불리한 문제가 처음부터 제기조차 되지 못하도록 정책문제의 정의와 의제설정과정에서 은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증적 분석방법론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④. 신엘리트이론은 엘리트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이 없는 일반대중이나 약자의 이익과 의견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사례를 무의사결정론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만 묶은 것은?

- | | |
|--------------|------------|
| ㄱ.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ㄴ. 공정거래위원회 |
| ㄷ. 특허청 | ㄹ. 국가기록원 |
| ㅁ. 국립중앙박물관 | ㄷ. 문화재청 |

- | | |
|--------|--------|
| ① ㄱ, ㄴ | ② ㄴ, ㄷ |
| ③ ㄷ, ㅁ | ④ ㄷ, ㅁ |

【조직-1】 소속기관

- ④ [O]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다. 부속기관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이다.

ㄱ [O]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이다(부속기관). 행안부의 그 외 소속기관은 중앙공무원 교육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소청심사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있다.

- ㄴ [X]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다.
- ㄷ [X] 특허청은 중앙행정기관이다.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이다.
- ㄹ [O] 국가기록원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이다(부속기관).
- ㅁ [O]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이다(부속기관). 문체부의 그 외 소속기관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중앙극장 등이 있다.
- ㅂ [X] 문화재청은 중앙행정기관이다.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기관으로 문광부 소속이다.

<주요 중앙행정기관별 소속기관>

감사원	감사교육원	외교부	국가주재 대사관, 영사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환경부	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홍수통제소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사무소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지방해양수산청	과기부	지방우정청, 중앙전파관리소
국세청	지방국세청, 지방세무서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이북 5도
관세청	지방세관	통계청	지방통계청, 통계교육원
조달청	지방조달청, 조달교육원	병무청	지방병무청

4. 혼합주사모형(mixed-scanning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책 결정과정을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특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한다.
 - ② 정책의 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한다.
 - ③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불확실성의 회피, 조직의 학습, 표준운영절차(SOP)의 활용 등을 특징으로 한다.
 - ④ 상황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극히 제한된 투입 변수의 변동에 주의를 집중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정책·2] 혼합주사모형

- ② [O] 혼합주사모형은 에치오니(Etzioni)가 제시한 것으로 장기적인 전략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결정은 합리모형에 의하여, 단기적인 전략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결정은 점증모형에 의하여 결정한다.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변증법적으로 합한 것으로 장기적 전략과 단기적 전술을 구분하여 정책결정의 방식을 달리한다.
-
- ① [X] Simon과 March의 조직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새로운 상황이 일어나도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정책)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미 존재하는 프로그램의 요소들을 재조합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응한다는 것이다. 조직모형은 개인의 의사결정에 적용되는 Simon의 만족모형을 조직에 적용한 모형이다. 최적화 대신 만족화를 추구하고, 대안이나 대안의 결과는 탐색과정에서 순차적으로 발견되며, 행동프로그램이 대안으로 이용되고, 이 프로그램들은 느슨하게 연계되어있다고 본다.
- ③ [X] Cybert와 March의 회사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조직모형을 보다 발전시킨 모형이다. 회사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구성원들의 연합체(Coalition)로 갈등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하다(갈등의 준해결). 목표가 설정된 뒤에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합리모형과 달리, 조직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문제로 인식하고 대안을 찾거나 목표를 하향조정한다(문제 중심의 탐색). 조직을 둘러싼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하기 위하여 단기적 환류에 의존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환경과 타협한다(불확실성의 회피). 조직학습 등을 통해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한다.
- ④ [X] 사이버네틱스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환경은 결정론적 구조가 아니라 환경론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책결정자는 불완전한 정보 하에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가장 근본적인 변수에 집중하여 정책결정을 내리는 것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 ②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직·2] 공공기관

- ④ [X]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지정권한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관리감독한다. 행안부 장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경영진단 및 개선명령, 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의 분류>

-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③)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②)
 -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①)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6. 정책 평가의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역사요인, 성숙요인, 회귀요인은 모두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다.
 - ② 준실험이 갖는 약점은 주로 외적 타당성보다는 내적 타당성에 관한 것이다.
 - ③ 실험대상자들이 실험의 대상으로 자신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는 내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이다.
 - ④ 정책집행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평가는 외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정책-3] 정책평가의 타당성

- ② [O] 준실험은 진실성이 비해 내적타당성이 약한 실험을 말한다. 진실성은 무작위 배정(random sampling)을 통해 내적타당성 저해요인을 극복하지만, 준실험은 무작위 배정을 할 수 없다.
- ① [X] 역사요인(실험기간 중 일어난 사건에 의한 대상집단의 특성변화), 성숙요인(시간의 경과에 따른 대상집단의 특성변화), 회귀요인(실험대상이 극단적인 값을 가지기 때문에 재측정시 평균으로 회귀하는 경향), 선발요인(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 상실요인(실험기간 중 실험대상의 중도포기 또는 탈락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 검사요인(사전검사에 대한 친숙도가 사후측정에 미치는 영향), 측정수단요인(측정기준과 측정수단이 변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이 내적타당성 저해요인이다. 외적타당성 저해요인은 사전검사에 대한 반응, 실험집단의 오염 등이 있다.
- ③ [X] 호순효과이다. 이는 실험집단이 오염되는 것으로 외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이다.
- ④ [X] 인과관계(원인은 결과에 선행+원인과 결과가 함께 변화+제 3변수의 부재)는 내적 타당성과 연관된다. 정책(원인)과 정책효과(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평가는 내적타당성을 갖춘 평가이다.

7.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의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하여 이전에 관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정책분야에 개입하는 것이다.
 - ② 정책종결은 현존하는 정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으로 정책수단이 되는 사업과 지원 예산을 중단하고 이들을 대체할 다른 수단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 ③ 과속차량 단속이라는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에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는 수단을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를 통한 단속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책승계 중 선형적(linear) 승계에 해당한다.
 - ④ 정책유지는 현재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정책-4] 정책변동

- ① [X]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은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으로, 특정 사회문제가 처음으로 정책문제화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관련 정책이나 활동이 없고 이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하여 이전에 관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정책분야에 개입하는 것이다.
- ② [O] 정책종결시 정부는 그 분야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고 민간부문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된다. 실질적인 내용 측면에서 볼 때 법률, 사업, 조직, 예산 등이 폐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 중 하나라도 종결되면 부분종결이라고 한다. 정책종결의 형태에는 폭발형(일시에 정책이 폐지), 점감형(정책이 서서히 소멸), 혼합형(폭발형+점감형)이 있다.
- ③ [O] 정책승계는 현존하는 정책의 기본적인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 정책의 중요한 일부를 없애거나 새로운 부분을 추가, 대체 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인 정책목표는 수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 '종결'이 아니라 정책 '승계'라고 한다.

(정책학 원론, 707P)

- ▶ 정책승계의 4가지 유형은 정책대체, 부분종결, 복합적 정책승계, 정책통합 및 분할이다. 정책대체는 선형적(linear) 승계라고 부른다. 과속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기존에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는 수단을 채택했는데, 요즘은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단속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불경기에 경기 부양책을 쓰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이를 중단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재도입하는 것도 정책대체에 포함된다.
- ※ 부분종결 : 정책의 일부를 유지하면서 다른 일부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석유파동으로 석유부족이 일시적으로 심해지자 소비세를 부과하고 석유배급제를 실시했는데, 석유공급이 안정화되자 소비세는 유지하되 배급제는 폐지
- ※ 복합적 정책승계 : 정책유지, 정책대체, 정책종결, 정책추가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비선형적(non linear) 정책승계
- ④ [O] 정책유지는 정책의 기본특성을 그대로 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책을 구성하는 사업 내용이나 예산액수, 집행절차의 변경이 있더라도 정책의 기본특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8. 동기이론 중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동기부여의 강도를 산정하는 기본개념으로 유인가(valence), 수단성(instrumentality), 기대감(expectancy)을 제시하였다.
- ㄴ. 직무가 조직화되는 방법에 따라 조직원의 노력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모든 직무를 다섯 가지 핵심 직무 차원으로 구분했다.
- ㄷ. 개인은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며 이때 주어지는 보상은 공평한 것으로 지각되어야 하는데, 개인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면 만족을 줄 수 없게 된다고 본다.
- ㄹ. 인간의 욕구를 존재, 관계, 성장의 3단계로 나누고 '좌절-퇴행' 접근법을 주장한다.
- ㅁ. 인간은 미성숙상태에서 성숙상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성격변화를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조직-3] 과정이론

- ① [O] 브룸의 기대이론(ㄱ), 헤르만과 올드햄의 직무특성이론(ㄴ), 애덤스의 형평성 이론(ㄷ)을 과정이론으로 분류하였다. 새행정학에서는 헤르만과 올드햄의 직무특성이론을 과정이론으로 분류한다.

ㄴ. 직무특성이론(새행정학 2.0, 이종수 외) 195P

헤르만과 올드햄은 직무특성이론에서 직무가 조직화되는 방법에 따라 조직원의 노력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했다. 직무특성모형은 직무를 다섯가지 핵심차원으로 구분했다. 첫째, 기술적 다양성은 직무가 다양한 활동을 요구하는 정도를 말한다. 둘째, 과업 전체성은 하나의 직무가 다른 직무와 구분되는 독립적 단위로 형성된 수준을 말한다. 셋째, 과업중요성은 직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이나 업무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정도를 말한다. 넷째, 자율성은 직무를 계획하고 업무 처리절차를 결정할 때 자유와 독립성의 정도를 말한다. 다섯째, 피드백은 업무활동수행성과의 효과성에 대한 직접적이고 분명한 정보를 얻도록 해주는 정도를 말한다.

조직원이 처리하는 직무의 기술이 다양하고, 과업정체성이 확고하며, 과업의 중요성이 높으면 조직원은 심리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중요하고 가치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경험적 의미성). 또한 자율성이 보장된 직무는 조직원들에게 심리적으로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을 부여해준다(경험적 책임감). 직무가 피드백을 정확히 제시해줄 경우 조직원들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직무를 처리할 것인지를 알게 된다(결과에 대한 지식).

경험적 의미성, 경험적 책임감, 결과에 대한 지식이 높을 때 조직원의 동기부여가 높아지며 결국이나 이직이 줄어든다. 다만, 직무차원과 결과 사이에는 개인의 성장욕구(존경 및 자아실현 욕구)가 조절작용을 하며, 직무의 질이 높아질 때 성장 욕구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쉽게 경험하며, 더욱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다.

9. 공무원 임용시험의 효용성을 측정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험의 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의미하며 그 종류에는 기술타당성, 내용타당성, 구성타당성 등이 있다.
 - ② 내용타당성은 시험 성적이 직무수행실적과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는 타당성으로 두 요소 간 상관계수로 측정된다.
 - ③ 측정 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정도를 신뢰성이라고 하며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시험을 반복하여 치르더라도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을 때 신뢰성을 갖게 된다.
 - ④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재시험법(test-retest)과 동질 이형법(equivalent forms) 등이 사용된다.

[인사-1] 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

- ② [X] 내용타당성은 실제 직무에서 필요한 내용을 시험으로 출제하는 것으로 전문가가 검토하여 내용타당성을 판단한다. 지문의 내용은 기술타당성이다. 현재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현재의 시험성과 미래의 직무수행실적의 상관관계를 판단하면 예측적 타당성, 재직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보게 한 후 시험성과 현재의 직무수행실적의 상관관계를 판단하면 동시적 타당성에 해당한다.

10.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공직을 직업전문 분야로 확립시키기도 하지만, 행정의 전문성 약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 ② 엽관주의하에서는 행정의 민주성과 관료적 대응성의 향상은 물론 정책수행 과정의 효율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 ③ 대표관료제는 역차별 문제의 발생과 실적주의 훼손의 비판이 제기되며, 사회적 소외집단을 배려하는 우리나라의 균형인사 정책은 미국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 ④ 총액인건비제도는 일반적으로 기구·정원 조정에 대한 재정 당국의 중앙통제는 그대로 둔 채 수당의 신설·통합·폐지와 절감예산 활용 등에서의 부처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성을 갖는다.

[인사-2] 인사제도

- ④ [X] 총액인건비제도는 기구 및 정원조정에 대해 일정한 자율성을 가진다.

<총액인건비제도>

예산	·기관장이 인건비와 운영경비 세부항목에 대한 전용 가능 ·총액인건비 대상경비의 여유자원 사용시 재량권 행사 가능
보수	·성과상여금, 복지포인트 등에 대한 기관 자율성 부여
조직	·부처 정원범위 내 총리령 및 부령으로 과 단위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 가능 ·2018년부터 총 정원의 5% 내 신설가능
정원	·3급 이상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통제

11. 지방재정의 구성 요소 중 의존재원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유도·조정을 통한 국가차원의 통합성 유지
 - ②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 ③ 지방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 시정
 - ④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지방분권화 촉진

[지방자치-1] 의존재원

- ④ [X]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지방분권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 ① [O] 의존재원은 국가차원의 통합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환경, 인권문제 등 국가적으로 통일되어야 하는 사무가 집행되는 데에는 의존재원이 필수적이다. 의존재원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행위를 유도·조정하며 국가차원의 통합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② [O]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방재정을 안정화시킨다. 지방정부 재정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행정수요에 대한 탄력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가령 홍수가 발생하거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했을 때에 지방정부는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의 지원은 이를 완화하여 빠른 시간 내에 지방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다.
- ③ [O] 지방정부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재정이 영세한 지방정부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재정이 양호한 지방정부에는 지원을 하지 않거나 적게 지원함으로써 지방정부 간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 ※ 공공재에 대한 적극적 태도 유도 :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지방정부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는 공공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결과를 낼 수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과소 공급이 나타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의존재원과 자주재원>

구분	의존재원	자주재원
의미	·중앙정부가 상급지방정부 등 외부로부터 받는 자금	·지방정부가 그 자체의 재원으로부터 자주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수입
종류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12. 국세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취득세	ㄴ. 자동차세
ㄷ. 종합부동산세	ㄹ. 인지세
ㅁ. 등록면허세	ㅂ. 주세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ㅁ ④ ㄹ, ㅂ

[지방자치-2] 국세

- ④ [O]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다.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주세는 국세이다.

<지방세의 종류>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 세	도 세	시·군 세	자치구 세
지방세	·취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

13. 「국가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와 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며칠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가?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①	90일	40일	30일
②	90일	50일	30일
③	120일	50일	40일
④	120일	50일	30일

[재무-1] 예산안 제출시기

③ [O] 「국가재정법」은 120일 전, 「지방자치법」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50일 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40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14.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화에 대한 잠재가격(shadow price)의 측정과정에서 실제 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
- ②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은 순현재가치를 영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 ③ 칼도－ Hicks 기준(Kaldor-Hicks criterion)은 재분배적 편익의 문제를 중시한다.
- ④ 정책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정책-5] 비용편익분석

- ③ [X] 칼도- Hicks 기준은 사회 일부의 희생이 있더라도 이를 보상하고 총 효용을 증가한다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준이다.
- ▶ 칼도- Hicks 기준은 재분배적 편익의 문제를 중시한다.
- ※ (17 생안 7) 칼도 - Hicks 기준(Kaldor-Hicks criterion)은 전통적인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의 기초가 된다.

- ① [O] 잠재가격이란 시장가격이 경제적 비용이나 편익을 반영하지 못할 때, 경제적 관점에서 이를 평가하는 가격을 말한다.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 비용(기회비용)으로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야 한다. 시장가격이 기회비용을 반영한다면 시장가격을 그대로 쓰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분석자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비용을 측정할 수밖에 없다. 이때 실제 가치가 왜곡될 수 있다.
- ② [O] 내부수익률(IRR)은 순현재가치(NPV : 편익의 총 현재가치-비용의 총 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내부수익률이 높을수록 투자수익률이 높다는 의미이므로 좋은 사업으로 볼 수 있다.
- ④ [O] 경제적 비용(기회비용)에 대한 정의이다.

<비용편익분석 대안비교의 기준>

구분	순 현재가치 (NPV)	편익·비용 비율 (BC Ratio)	내부수익률 (IRR)
비용 편익 계산	• 편익(B)과 비용(C)의 현재가치계산 • 편익현재가치 - 비용현재가치	• 편익(B)의 현재가치/비용(C)의 현재가치	• 편익(B)의 현재가치 =비용(C)의 현재가치가 되는 수익률
타당성	• B-C>0(=NPV>0)	• B/C >1	• 내부수익률(i)>기준수익률(r)
평가	• 현재관점을 고려한 최선의 척도 • 1차적 기준 • 대규모 사업에 활용	• 사업규모 파악이 곤란 • 소규모 사업에 활용 • NPV에 보완적으로 활용	• 가장 안정적, 우수기준 • 사업의 구조에 따라 복수의 내부수익률 가능하여 혼란

15.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②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④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인사-3] 행정윤리

- ④ [X] 공직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되어있다.
- ▶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계·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O] 퇴직 이전 5년간, 퇴직 이후 3년간을 꼭 기억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 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O]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들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③ [O]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운영한다.

「부패방지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탁금지법 주요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기준

유형	위반행위	재제수준
부정청탁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형벌
금품등 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자	과태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자	형벌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등	과태료

<청탁금지법 선물의 가액범위 등>

구 분		기 준	변 경
가액 범위	음 식 물	3만원	동 일
	선 물	5만원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 조 사 비	10만원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범위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 부 강 의 등 상 한 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직급별 구분 있음 (시간당 20~5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시간당 40만원+)
	국립립 학교 교직원	공무원과 동일 (시간당 20~50만원)	사립 학교 교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20~40만원)	일반 언론사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외 부 강 의 등 신고	사전 신고사항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 포함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 제외
	보완 신고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매 년	신규채용 시

16.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 ②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의회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 ④ 외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3] 지방채

③ [O]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재정법」의 예외규정이 특별법에 있다.

「제주특별법」제126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① [X]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④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X] 지방채의 차환을 위한 지방채의 발행은 가능하다.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④ [X] 외채를 발행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승인이 필요하다.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Porto Alegre)시는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다.
 - ② 예산과정의 시민참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가능하지만, 참여예산제는 주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 ③ 참여예산제는 과정적 측면보다는 결과적 측면의 이념을 지향한다.
 - ④ 예산 과정의 단계별로 볼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참여에 초점을 둔다.

[지방자치-4] 참여예산제도

③ [X] 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단계에 시민들이 참여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과정 중심적 제도이다.

① [O] 참여예산제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 시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② [O] 시민들의 비공식적 참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가능하나 참여예산제는 중앙정부보다 범위가 작은 지방정부에 도입되기 용이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2011년부터 지방정부에 참여예산제가 의무화되어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3. 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3., 2017. 7. 26., 2018. 3. 27.>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O] 예산편성단계에 시민들의 재정선호를 투입하는 것이 참여예산제도이다.

18. 정부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미국 건국초기에는 연방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했으며, 연방과 주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 ② 딜런의 규칙(Dillon's rule)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로서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항 외에도 포괄적인 권한을 지닌다.
 - ③ 영국의 경우 개별적으로 수권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보유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금지된다.
 - ④ 일본의 경우 메이지유신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국가의 관여를 폐지하거나 축소시키는 등의 분권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방자치-5] 정부간 관계

- ③ [O] 영국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된 국가로 주민자치의 형태를 취한다. 주민자치는 주민에 의해 개별적으로 수권받은 사무에 대해 자치권을 보유하고, 그 외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금지한다.
-
- ① [X] 미국은 건국 초기에 국가연합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권력의 독점과 전제에 대한 경계로 인하여 느슨한 결속체에 불과하였다. 국가연합은 조세권이 없고 독립된 행정부와 행정수반이 없어 정부로서의 독자적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연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된 것은 남북전쟁 이후이다.
- ② [X] 딜런의 규칙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소극적으로 해석한다. 딜런이라는 판사는 지방정부에 대한 공극적인 권한은 주 의회에 있으며, 지방정부는 주 의회가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한과 이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부수적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지방정부에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홀름의 규칙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
- ④ [X]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래 20년에 걸쳐 지방자치제도를 정비하여 왔다. 일본은 중앙집권적 경향이 강하였으나 민주주의가 고조되고 정당정치가 확립되는 움직임 속에서 남자보통선거제도의 도입, 내무성의 관여 축소 등 민주적인 개혁도 이루어져 자치권이 확대되어 갔다.

문 19. 민원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체제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호작용을 통하여 주로 규제와 급부에 관련된 행정산출을 전달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④ 행정기관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총론-2] 민원행정

- ④ [X] 행정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민원처리법」 제2조(정의)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① [O]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주로 인·허가, 보조금 지원 등에서 많이 제기된다.
- ② [O] 사생활 관련 민원은 처리하지 않으며, 처리하지 않는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민원처리법」 제21조(민원처리의 예외)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③ [O] 고충민원의 처리를 통해 행정구제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20. 「국가재정법」상 재정건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감면율이란 당해 연도 국제 수입총액 대비 국제감면액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 ②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채무에 해당한다.
- ③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재무-2] 재정건전화

- ① [X] 국제감면율은 국제감면액을 국제수입총액과 국제감면액의 합계로 나눈 것이다.

「국가재정법」 제88조(국제감면의 제한) ①기획재정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제 수입총액과 국제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제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제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O] 국가채무에 해당한다.

「국가재정법」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운용방식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보기 어려운 회계 또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채권
 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

- ③ [O] 국고채무부담행위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가재정법」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④ [O] 예산의 의결된 후 배정이 가능하다.